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공수 445-46	(전화번호 323)	선결부형	초항 선결사항
처리기간	시			0184
시행일자	85. 1.			
보존연한	2, 3			
부서	기획관리실장 2000	사무관리과장 2000		
상하수국장	건설관리국장 119	업무개발과장 2000		
공수과장	민방위국장 460	배수개발과장 2000		
기안백일사	공감서출시(85. 1.)		토	주수방제개발과장 2000
정수 수신 참조	가안참조		발	통 제
제부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기준 조정			
(제1안)	85. 2. 4			
수신	내부발제 이규치 469			
제목	같은건			
1. 감사 142-857 (84. 11. 13) 및 감사 142-2 (85. 1. 4) 로와 관련입니다.				
2.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수요가 부합 정액공사비와 신규 건축 허가시 반영하고 있는 일반주택의 비상저수조 설치 기준을 적용 운영함에 있어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별첨과 같이 급수 공사의 정액공사비와 저수조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선 시행 코자 하오니 결제를 바랍니다.				
3.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기준 조정안 1부 4. 급수공사 사무취급 요령중 개정요령 공고안 1부 5.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고시안 1부. 끝.				
(제2안)				

1. 신규 건축허가시 반영하고 있는 비상저수조 설치기준을 필참과 같이 완화 조정 시행키로 하였기 통보하오니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 이행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2.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관련부서와 기타 유관기관(주택행정과, 주택기획과, 제개발과, 구청 건축과, 무청 주택과, 주택공사, 건축사협회등)에 통보하여 저수조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첨부 :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조정안 1부, 곱.

(제5안)

수신 : 수신처장

참조 : 수도공사과장

제목 :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기준 조정

1.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수요가 부담 정액공사비와 신규 건축허가시 반영하고 있는 일반주택외 비상저수조 설치기준을 적용 운영함에 있어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필참과 같이 급수공사의 정액공사비와 저수조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선시행키로 하였기 통보하오니 이행에 착오 없도록 함 것.

2. 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안은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저수조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함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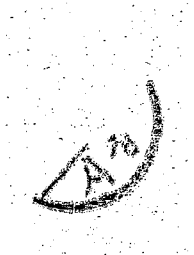
첨부 : 1.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안 1부

2.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조정안 1부, 곱.

수신처 : 서구1-17.

1985. 7.

물수문서 경매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기준 조정



상 하 수 국

수급률조사 정액 공사비 및 저수조 설치기준 조항

요 지

0. 시정지시사항 (84. 12. 상수도 급수실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공사비 과다로 급수신청기피

(조사대상 미급수 162가구의 38.3%)

- 영세민 급수공사 비용부담 경감 방안 강구

0. 감사원 지적 합리적 개선요구

- 표준도로 골차복구를 수반하지 않는 비표준도로 지역도 정액

공사비에 포함된 도로복구비 부담사태 개선 시정

(변류타, 고지대등 영세민 가중차역 가의 비표준도로)

- 비상저수조 설치기준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

0. 개선내용

- 정액공사비 재조정고시 (표준도로 골차복구 여부 구분)

- 기존수전의 구경확대 공사시 종가대상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정액공사비 산정부과

-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 (일반주택)

금수공사의 정액금사비 조정

1. 관련근거

0. 금수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

0. 정액금사비 조정고시

- 세액상 또는 건축단위 면적상 일정한 금액

0. 정액금사비 산출방법

- 계획금수지역내의 간선배관 및 수요가 안입금수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후비, 도로복구비, 양수기대금, 일반행정관리비, 수수료 등의 합계액

2. 연행 정액금사비

- 0. 고시 (제290호 (87. 6. 10)
(제112호 (83. 2. 25))

0. 정액금사비 (고시금액)

- 인건축면적 165㎡ 미만 : 290,000원
- 인건축면적 165㎡ 이상 : 1㎡당 1,800원

0. 정액금사비 산출 기준

구분	산출금액	비고
계	290,000원	1979년도에 시행된 금수공사의 실제 소요금사비를 근거로 전문원가조사기관인 산경회계법인에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평균 금액임.
간선공사비	72,764 "	
전용금수장치비	143,856 "	
도로복구비	62,860 "	
일반행정관리비, 기차	10,520 "	

* 165㎡ 이상건물 : 290,000원 ÷ 165㎡ = 1,800원/㎡

3. 문제점

- 0. 포장도로의 골차복구 여부에 불구하고 정액공사비 부과
- 0. 포장도로 골차복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비포장도로 지역도 정액공사비에 포함된 토보복구비 부담하는 불합리 요인 발생
- 0. 변부릭, 고지태릉 일세민의 공사비 부담과중으로 급수신청 기피
- 0. 기존수전을 설치 급수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외 용토와 규모에 맞는 급수관 및 양수기의 구강확대공사시 정액공사비 이중부담 사례 발생
- 0. 감사원 감사시 지적 합리적 개선 요구

4. 개선대책

가. 정액공사비 재조정 고시

- 0. 급수공사시 포장도로의 골차복구를 수반하는 지역과 수반하지 않는 지역으로 대별하여 정액공사비 구분 조정

0. 조정정액 공사비

구 분	정 액 공 사 비	
	포장도로지역	비포장도로지역
연건축면적 165㎡ 미만	290,000원	227,200원
" 165㎡ 이상	1㎡당 1,800원	1㎡당 1,400원

나. 기존수련의 구경화태공사시 용가대상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 산정부과

0. 기존수로전을 설치 급수하고있는 건축물로서 신축 또는 증·개축 통와 사유로 건물외 용도의 규모에 맞는 급수관 (양수기포함) 구경화태공사시 기존건물 면적을 용제한 용가대상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정액공사비 산정부과

0. 용가대상 건축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 또는 건축면적의 용가가 없는 경우의 급수관 (양수기포함) 구경화태공사시는 실제로 소요되는 공사비 산정 부과

0. 급수공사 사후취급 요령 개정

제조장 계량 보호

= 정액공사비 산출 기초 (제조장내역)

구분	산출금액		비고
	포장토표지역	비포장토표지역	
계	290,000원	227,200원	
간선공사비	72,300	72,800	
전용급수장치비	143,900	143,900	
토표복구비	62,800	-	
일반행정관리비, 기판	10,500	10,500	

비상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


1. 관련 근거

- 0. 서장 지시사항 제46호 (78. 5. 8)
 - 비상용 수도볼 적정량 확보방안 검토하여 건축행정에 반영
- 0. 시장방첩 제1496호 (78. 5. 17) 및 제0664호 (83. 3. 18)
 - 신규 건축허가시 비상용 저수조 설치 의무화
 - 기존주택은 저수조 설치 권장

2. 현행 일반주택의 저수조 설치기준

- 0. 건평 85㎡ 미만 : 1.0㎡ 이상
- 0. 건평 85㎡ 이상 : 건평 1㎡ 당 15ℓ 이상

3. 통제범

- 0. 저수조 설치기준 용량 과다로 보완하기
- 0. 건축주의 비용부담 과중으로 저수조 설치 기피
(미설치 또는 시설미비, 용량 부족 등)
- 0. 소규모 연립주택의 지하저수조의 관리상대 및 시설미비로 미합용 방지사례 발생
- 0. 감사원 감사시 지적 합리적 개선요구 
 - 저수조 설치기준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민원이 없도록 대책 마련
 - 임차규모 미만의 주택은 저수조 설치대상에서 제외
 - 저수조 설치의무가 없는 기존건물에 대하여는 골수공사 승인용

4. 개선 대책

가. 연립주택의 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조정

시 설 규 모	저수조 설치 용량			
	년 령	완 화 조 경 인		
		1안	2안	3안
건평 85㎡ 미만	7.0㎥ 이상	0.5㎥ 이상	권장	연행 용량으로 기속 시행하되
건평 85㎡ 이상	건평 1㎡ 당 15ℓ 이상	건평 1㎡ 당 15ℓ 이상	건평 1㎡ 당 15ℓ 이상	최소 또는 지하 수 개발시 권장

- * 1안 — 저수조 용량을 축소 조정
- 2안 — 건축면적 협소한 소규모 주택 저수조 설치 권장
- 3안 — 단진, 탄수용 비상식 용수 확보 대비

0. 적 안 채택

0. 신규 건축허가시 반영

- 기존 건물은 저수조 설치 권장

0. 급수공사 사무취급 요령 개정 (제4장 제5항 나호)

나. 개발 난방식용 소규모 연립주택의 지하저수조 설치 지양

0. 옥상 또는 옥상보다 높은 위치에 저수조 설치 활용

- 작업유하로 과세대에 상시 급수

0. 연립주택 건설사업 임지심의 또는 건축심의회 반영

* 급수 445-126 (84. 4. 14) 호로 지침 마련 각구에 기해 시달

서울특별시예규 제 1호

부	5117	1
시		
장		

서울특별시 급수공사 사무취급 요령중 개정 요령

서울특별시 급수공사 사무취급 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7항 바호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 수보전역 개량, 수선, 절기불의 공사

마만, 기존 건물면적을 제외한 증축 연면적이 165㎡ 이상인 건물의

급수관 (양수기포함) 구경확대공사는 증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액

공사비를 산정 부과한다.

제4항 제5항 나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비상용 저수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0. 주택 (85㎡ 미만) : "1㎡ 이상"을 " (호)

(85㎡ 이상) : "1㎡ 당1.5㎡"을 " (호)



부 칙

이 요령은 1985. 2. 부칙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 제

번호 5117 호
 1985. 2. 10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및 실시 지역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정액공사비와 정액급수공사 실시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서울특별시공임본령

1. 실시 일시: 1985년 2월 - 비 승인본부에서 시행
2. 실시 지역: 서울특별시 급수 가능 지역 전역
(단, 제5조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
3. 대상: 급수를 신축하는 건축물
4. 정액공사비 내용

구 분	정 액 공 사 비	
	포장도로급수특구지역	비포장 도로지역
연건축면적 165㎡ 미만	290,000원	227,200원
연건축면적 165㎡ 이상	1㎡ 당 1,800원	1㎡ 당 1,400원

- 실제 공사비가 정액공사비의 ^{150%} 150% 이상 초과될시에는 당시 급수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초과 소요비용을 정액공사비에 가산 징수함.
- 시설편담금은 별도로 가산됨.

5. 특 정 지 역

0. 급수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를 수요가에서 특별히 부담하여야 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종로구 영창단지 및 주변표고 125m 이상지역

- 구로구 시흥동 5번지 범원단지 일대

0. 토면은 관할구정 수로공사와에 비쳐

6. 공사비 납부방법

0. 공사비는 급수신청후 납입고지서에 의거 공사 시행전에 납부하여야 함.

